

2017년 제2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접수 주요 변경사항

구분	당 초	변 경('17년 제2차~)																
신청 서류	◦ 기본증명서(일반) 1부 <table><tr><th colspan="2">기 본 증 명 서 (일 반)</th></tr><tr><td>등록기준지</td><td></td></tr><tr><td>구 분</td><td>상 세 내 용</td></tr><tr><td>작성</td><td>[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] 2008년 01월 01일 [작성사유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</td></tr></table>	기 본 증 명 서 (일 반)		등록기준지		구 분	상 세 내 용	작성	[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] 2008년 01월 01일 [작성사유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	◦ 기본증명서(특정) 1부 <table><tr><th colspan="2">기 본 증 명 서 (특 정 - 친 권 · 후 권)</th></tr><tr><td>등록기준지</td><td></td></tr><tr><td>구 분</td><td>상 세 내 용</td></tr><tr><td>작성</td><td>[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] 2008년 01월 01일 [작성사유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</td></tr></table> - 평생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결격사유* 유무 조회를 위해 <u>기본증명서는 반드시 특정증명서 유형으로 제출</u> *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	기 본 증 명 서 (특 정 - 친 권 · 후 권)		등록기준지		구 분	상 세 내 용	작성	[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] 2008년 01월 01일 [작성사유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
	기 본 증 명 서 (일 반)																	
등록기준지																		
구 분	상 세 내 용																	
작성	[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] 2008년 01월 01일 [작성사유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																	
기 본 증 명 서 (특 정 - 친 권 · 후 권)																		
등록기준지																		
구 분	상 세 내 용																	
작성	[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] 2008년 01월 01일 [작성사유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																	

[참고]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<http://efamily.scourt.go.kr/>) 기본증명서(특정) 발급 선택화면

	☒ 발급	☐ 열람 후 발급	☐ 열람
증명서 종류	☐ 기본증명서	0 통	(☒ 일반 ☐ 상세)
	☒ 기본증명서(친권·후견)	1 통	(☒ 특정)
	☐ 가족관계증명서	0 통	(☒ 일반 ☐ 상세)
	☐ 혼인관계증명서	0 통	(☒ 일반 ☐ 상세)
	☐ 입양관계증명서	0 통	(☒ 일반 ☐ 상세)
	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0 통	(☒ 일반 ☐ 상세)
	발급통수 합계		1 통